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5520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재훈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답 2,535㎡에 관하여 2017. 2. 16. 체결된 증여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8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7. 2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등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686호, 대법원 2018도14019호).

나. 한편 C은 2017. 2. 16.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답 2,5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895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25. C은 원고에게 92,935,542원, 선정자 E에게 64,489,286원, 선정자 F에게 94,806,299원, 선정자 G에게 68,653,265원, 선정자 H에게 80,725,8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520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C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선 정 자 명 단

1. A
2. G
3. E
4. F
5. H 끝.

